

대전지방법원

제 4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4노368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 고 인 화인건설 주식회사 (000000-0000000)
소재지 천안시 000 0000 00
대표자 사내이사 000

항 소 인 검사
검 사 000(기소), 000(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000, 000

원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 1. 23. 선고 2023고단1488 판결
판 결 선 고 2025. 2. 19.

주 문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범리오해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000, 피고인 화인건설 주식회사는 피해자의 사용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자이고 이 사건 공사는 피고인 화인건설의 공사범위에 포함되며, 피고인 000이 이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함이 상당함에도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범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

가. 사실오인 등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000, 피고인 화인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000, 피고인 화인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내용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변소에 부합하는 사실, 즉 ① 피고인 화인건설 주식회사와 0000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서에는 공사의 범위가 “기계설비공사”로 기재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오수관로가 기계설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기계설비공사에 이 사건 공사가 포함된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전혀 발견되지 않는 점, ② 피고인 000가 이 사건 공사를 할 근로자를 구하지 못하여 사고 전날 피고인 000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근로자 한 명을 보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000이 일용노동자로 고용해 온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000가 지시하는 작업을 하도록 한 점, ③ 피고인 000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하였고, 피고인 000은 현장에 있지

도 않았으며 공사와 관련된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보아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000	_____
	판사	000	_____
	판사	000	_____